

H-1B 비자는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이다. H-1B 비자의 장점은 많이 있다.

보통 H-1B는 4월부터 신청해서 승인되면 10월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H-1B를 받으면 총 6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. 그리고 만약 취업이민서류가 진행되는 경우 체류기간을 6년보다 더 연장할 수도 있다.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증(labor certification)이 승인된 후에는 H-1B를 1년 씩 무한정 연장할 수 있고 취업이민의 두 번째 단계인 I-140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는 H-1B를 3년 씩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.

그리고 고용주를 바꾸는 경



이동찬

이민 변호사

시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.

그 이유는 H-1B 청원서가 승인된 후 국경에 나갔다가 이전에 받았던 H-1B 비자를 사용하여 지금의 신분과 관계

해야한다면 유학생 비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. 유학생 비자 신청인은 미국 거주 의도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. 반면 H-1B 비자가 있으면 영주권이 이민국에 계류되어 있더라도 H-1B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.

위와 같이 H-1B 비자의 장점은 많다. 그러나 H-1B 비자의 단점 또한 있다. H-1B를 받으려면 높은 이민국 인지세를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. H-1B 청원서가 \$325, 사기방지비가 \$500, 그리고 H-1B 교육 훈련비가 스폰서의 직원 수에 따라서 \$750 또는 \$1,500이 될 수 있다. 그 인지세에 옵션인 급행료 \$1,225를 추가한

H-1B 비자

우에도 H-1B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편리하다. 다른 취업 비자는 이민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지만 새로운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다. 그러나 H-1B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H-1B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된 후부터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. 보통 고용주들이 H-1B 신청자가 일을 바로 시작하는 것을 원한다. 그래서 H-1B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고용주를 바꿀 수 있다.

그리고 실직하는 경우 또한 H-1B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. 실직을 하더라도 바로 새로운 직장에서 서류를 제출하여 H-1B 신청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가 없다. 그러나 실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바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흔한데 그런 경우 대사관에서 H-1B 비자 stamping을 사전에 받고 그 비자가 유효하다면 이민국에 H-1B 체류신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H-1B 청원서 심사만 신청하는 것이 신분을 다

없이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입국할 때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아 체류신분에 공백이 있었다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.

이민국에 H-1B 체류신분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H-1B 신분을 유지했는지 이민국에서 확인을 한다. 그럴 때 H-1B 서류를 제출하기 바로 직전에 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체류연장 신청은 거절될 수 있다.

그리고 H-1B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문제가 없다. H-1B는 미국에 거주할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허용된다.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H-1B체류기간을 쉽게 연장할 수도 있고 고용주를 바꾸어 H-1B를 재신청할 수도 있다.

예를 들자면 H-1B 비자가 아닌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(I-485)을 신청할 수는 있다. 그러나 미국을 떠난 후 재입국

다면 인지세가 \$3,500보다 많을 수 있다.

다른 단점은 이민국에서 요즘 H-1B를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것이다. 3년 전에는 이민국에서 지금보다 훨씬 느슨하게 H-1B를 심사했다. 그러나 요즘 추세는 이민국에서 추가서류요청을 많이 하고 심사 또한 까다롭게 한다. 보편적으로 이민국에서 Accountant, Lawyer, Computer Engineer, Graphic Designer 등은 쉽게 H-1B를 승인한다. 그러나 비즈니스와 관련된 전문직은 이민국에서 아주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. 예를 들자면 3년 전 많은 사람들이 Market Research Analyst직으로 쉽게 H-1B를 받았다. 지금은 회사규모가 작으면 Market Research Analyst직으로 H-1B를 받기가 너무 힘들어 졌다. 증빙자료가 많고 유리한 판례법이 있어도 이민국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케이스를 거절하는 경우가 흔하다.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. (213) 291-9980